

건축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1988.2.24, 대통령령 제12, 403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 유지 관리 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동 조사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제10조의 2).

나. 지체부자유자 전용 변소의 설치 기준을 정함(제27조 제4항).

다. 건설부에 두는 중앙 건축 위원회의 심의 사항·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의 4).

라. 지하층 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지표에서 깊이가 5미터 이상으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흙막이판 구조도를 제출 하도록 함(별표 1).

개정내용

건축법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 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 2중“별지 제5호의 2서식”을“별지 제5호의 3서식”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치도·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2.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 각 1부(영 제1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건축물의 유지관리) ①영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 관리 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법 제9조 및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여부 등

2. 구조: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 등

3. 설비:법 제22조·법 제22조의 2·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비상급수설비 등 건축설비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4. 형태:법 제31조·법 제39조의 2·법 제40조 법 제41조 및·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형태제한에 대한 적합 여부

5. 용도:법 제32조·법 제33조 및 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한 적합 여부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에 관한 조사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 조사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 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종 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2. 승강기 등 건축설비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각 1부

제1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제19조 제1항 본문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을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벽”으로 한다.

제23조의 2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 자용 변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소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 문은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각변의 길이는 유효폭이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대변기의 양측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27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 4(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4조의 2 제1항 및 영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앙 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축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건설부 장관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도1]중 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의 형질변경을 요하는 경우	토지의 지형 평면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중·횡단면 3. 구조물의 위치
		토지의 단면도 임의	1. 축척 2. 단면상세(구조물 및 인접 토지를 포함한다)
		흙막이판구조도(지 임의 표면에 길이 5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축척 2. 평면 및 단면 3. 공법

[별지 제5호의 2서식]을 [별지 제5호의 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의 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중 ④공사 감리자란 및 ⑤공사 시공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사 감리자	성명	명소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전화)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	소	
⑤공사 시공자	성명 또는 상호	소	건설업 면허번호 (전화) 자격 및 면허번호
	주	소	

[별지 제11호서식] 제1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의 2서식] 제67항중“(58+59+60+61+62)”를“(58+59+60+61+62+66)”으로 하며, 동서식 제70항중“Mcal / m³h³C”를“Mcal / m³hr”로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서식:생략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료:건설부 제공)